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3
1. 산지관리법 (개정).....	4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6
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7
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8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10
7. 주택법 (개정).....	11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12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3
1.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4
2.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5
3.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6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산지관리법

1 [일부개정 `21. 6. 15. 시행 `21. 12. 16.]

소관부서 :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 개정이유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원조성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가능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보전산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통하여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외부 토석의 불법적인 반입을 통한 행정질서 위반 및 경제적인 이익 추구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토석 반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 나.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3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 다.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15조의2제1항·제9항).
- 라. 외부 토석 불법반입을 방지하고 합법적 토석 반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항제4호).
- 마.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6항 신설).
- 바.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와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제54조제5호·제6호 및 제8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경영 지도 사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한편,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학교에 근접한 경우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3 [일부개정 `21. 12. 7. 시행 `22. 6. 8.]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044-201-4253

개정이유

-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1. 12. 6. 시행 `21. 12. 6.]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으로 인용조문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1. 12. 7. 및 시행 `21. 12. 9.]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 개정이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응급입원 비용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의 지원 대상, 범위 및 기간(제5조의2 신설)

- 1) 정신건강상 문제로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
- 2) 조기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하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3) 조기치료비의 지원 기간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정함.

나. 응급입원 비용의 지원 범위(제37조제1항)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비용청구 문제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1. 12. 7. 시행 `22. 1. 1.]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택법

7 [일부개정 `21. 12. 21. 시행 `21. 12. 21.]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 12. 3. 시행 `21. 12. 4.]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결일 `21. 12. 13.]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 21.10.8. 공포)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적용범위 및 적용의 배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 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1. 12. 9.]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22.1.13.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안 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조례안 첨부 청구서 제출(안 제3조)
- 다.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서명 요청(안 제4조)
- 라. 청구인 명부 제출시, 청구인 명부 내용 공표(안 제5조)
- 마. 공표는 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시·게재(안 제6조)
- 바.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 가능, 이의신청 결정은 열람 종료 14일 이내(안 제7조)
- 사. 청구인 명부에 대한 보정기간은 20일(안 제8조)
- 아.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을 위하여 시장은 서명 무효결정 검토사무 및 열람 사무 등을 협조(안 제9조)

■ 제정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지원 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환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의견21-0390] 울산광역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울산광역시장이 작은마을 진입 도로의 지정·고시 등을 하고 작은마을 진입 도로 정비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조례안」(이하 “울산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10가구 이상 집단 취락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을과 구·군도나 면도(面道), 이도(理道) 및 농도(農道)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작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울산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10조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제1호), 일반국도(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및 구도(제7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는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함)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면도, 이도 및 농도로 구분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私道)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제1호),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제2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제3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제3호)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도개설자(사도를 개설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그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울산시조례안에 따른 “작은마을 진입 도로”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법」 제4조에서는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公道(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2항) 사도의 개설 등 허가와 사도와公道의 접속구간 정비 등의 사무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법」에서는 사도의 개설 및 관리를 사도개설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설 허가 및 사도와 공도가 연결되는 접속구간 정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사도의 개설 등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사도에 해당하는 작은마을 진입 도로에 대한 개설·관리 등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울산시조례안은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사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사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

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 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의견21-0400] 경기도 시흥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출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판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이와 관련하여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각주: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로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에서 출생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46조제4항에서는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에서는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항),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제2항),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및 시·읍·면의 장의 직권 출생기록 의무를 신설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의견21-0353] 강원도 강릉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제5조, 제7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제26조의2)하고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조례의 개폐 청구권자에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인정(제1항)하고 있으며, 주민 총수 계산시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해 산정(제10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재한외국인”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제10조)과 사회적응 지원(제11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고,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외국인처우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재한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처우법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릉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의 주된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근로자이긴 하지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나 관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강릉시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제1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제2호), 외국인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제5호)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고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업무와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삭제

3. ~ 6. 삭제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 ⑨ 삭제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삭제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 · 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